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청소년보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자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관련 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과태료 부과대상(제2조) 관련

-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 삭제
-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신설

나.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별표 관련

- 제1호 :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50만원(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100만원)
- 제2호 :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과태료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50만원) → 삭제
- 제3호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50만원(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100만원)으로 개정
- 신 설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금액 최고 100만원(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100만원)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99.2.5개정) 및 국민건강증진법(99.2.8개정)의 개정으로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자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9년 2.8일 개정전의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였으나, 99년 2.8일 동법이 개정되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삭제되어 청소년 보호법(제51조, 제26조제1항)의 규율대상으로 하였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

전 강행규정에서 개정 후 임의규정으로 바뀔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를 현행법에서 삭제하였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신설 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래 5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증액 개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